DOI https://doi.org/10.22837/pac.2021.7.3.55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 : 메타 분석

최 영 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400편의 언론중재 논문 및 학위논문 54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언론중재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 〈미디어와 인격권〉을 중심으로 한 관련 논문의 안정적 생산과 1988년 이후 박사 7명, 석사 47명 배출 등 언론중재 연구 전공 정착, 그리고 염규호, 박용상, 성낙인, 한위수, 이승선, 이재진 등 주요 연구자군의 형성 등 언론중재 연구 40년의 성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5개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는 언론중재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 권력과 언론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90년대 케이블TV의 등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 최근의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드론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언론중재 연구도 급변하고 있다. 셋째, 빛나는 언론중재 연구 성과의 그림자 현상으로서, 언론의 자율규제 연구의 상대적 위축 현상, 피해구제와 인격권 연구와 대비되는 언론자유 연구의 빈곤, 그리고 법과 제도 관련 연구에 상반되는 신청인, 언론인, 중재인 연구의 공백 문제를 발견하고 언론중재 연구의 해결과제 차원에서 논의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 연구 40년을 탐색하는 첫 메타 분석 연구로서 가치와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제어: 언론중재, 언론중재연구, 인격권, 피해구제, 언론자유, 자율규제

* yjchoi@hallym.ac.kr

목 차

Ⅰ. 도입: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빛과 그림자
Ⅱ. 언론중재 연구 문헌검토
1. 언론중재 관련 메타분석 선행연구
2. 언론중재제도 40년 역사와 시기 구분
Ⅲ. 연구문제
Ⅳ.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2. 주제/소주제 분류: 토픽모델링, 휴먼코딩
Ⅴ. 연구 결과
1. 언론중재연구 40년의 성과
2. 5개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경향
3. 언론중재연구의 그림자 영역
Ⅵ. 결론

Ⅰ. 도입: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빛과 그림자

1981년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을 맞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는 물론, 유관 기관과 학회는 언론중재제도 40주년을 맞아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중재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 2021년 봄호는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장과 성과, 전망과 과제를 다뤘다. 40년전인 1981년 〈언론중재〉 창간호에서 이수정(1981), 박용상(1981), 한병구(1981) 등은 한국 언론이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

[1] 창간호에서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수정(1981)은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규정한 언론기본법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한편 언론이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담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 언론중재제도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상 판사는 "언론보도에 의해 논의대상이 된 개인에 대하여 신속한 반대 진술의

2021년 〈언론중재〉의 40주년 특집은 결국 1981년 언론중재제도 도입 당시 참여자들이 밝힌 취지가 지난 40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떠한 제도적 성장과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귀결됐는지를 요약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언론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양적인 중재 실적의 성과다. 중재위의 핵심 업무인 조정제도의 성과를 보면, 지난 40년간 총 64,759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 15,153건(23.4%)에 대해 '조정성립'을 이뤘고, 2,782건(4.3%)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표 1〉. 중재 신청 수의 증가에 따라 중재위원 수도 1981년 중재위 출범 때 39명이던 것이 1987년 70명, 2014년 이후 9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김창숙, 2021).

둘째,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청구권이 다양해졌다. 추후보도청구권(1987), 정정보도청구권(1995), 손해배상청구권(2009)이 법 개정 때마다 추가되었다. 셋째, 새롭게 등장한 매체를 중재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1987년 정간법 개정 때는 CATV, 2005년 언론중재법 때는 인터넷신문,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에는 포털뉴스와 IPTV를 중재 조정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2)]

넷째, 무엇보다 중재위의 법적 제도적 안착이다. 1981년 도입 때 언론통폐합의 근거 법률이었던 언론기본법 체계에서 생겨남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던 언론중재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재규, 2021). 언론중재위원회(2020)의 이용만족도조사에서 언중위는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기여', '언론환경 발전에 기여', '신뢰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 중점이 놓여"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필진으로 한병구 경희대 교수는 "일부 보도기관이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데서 각종 규제기구가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라 면서 언론들이 자율적으로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 양재규(2021)는 2009년 이후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매체가 급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서비스, OTT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데도 언론중재법이 거의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중재제도의 '지체' '정체'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감', '공익/사회적 책임', '공정성', '전문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언론중재 조정처리 성과

연도	청구건수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처리비율
1981-1990	709	184		26%
1991-2000	4,989	1,496	102	32%
2001-2010	10,398	3,600	630	41%
2011-2020	48,663	9,873	2,050	25%
합계	64,759	15,153	2,782	28%

출처: 김창숙 (2021, 35). 조정처리 비율 추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언론중재제도의 성장과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된 서구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박용상, 1981; 이재진, 2015).[3] 언론중재제도가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언론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숙한 언론으로 거듭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이승선, 2021).

그러나 애시당초 권위주의 정권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불균형적으로 강조한 언론중재제도가 언론규제와 통제, 언론 길들이기의 목적으로 시작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자유 위축 현상이 발생할 뿐,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널리즘의 문제점들이 언론중재제도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제1조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언론분쟁 조정제도는 "법원 밖에서 언론과 개인 간의 다툼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도입된 우리나라 특유의 언론 ADR(대안적 분쟁 해결제도)"로 평가된다(이재진, 2015, 48).

로 인해 해결되거나 나아졌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심석태, 2014).

오래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발행하는 〈관훈저널〉은 2021년 여름 '특별좌담, 언론중재제도 40년'을 특집으로 기획했다(관훈클럽, 2021). 언론의 입장과 언론자유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40년 역사와 제도적 특징, 언론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룬 〈관훈저널〉의 특집은 중재위의 〈언론중재〉지에 나타난 언론중재 40년의 성과와 과제의 내용과 사뭇 달랐다.

우선, 중재위의 긍정적인 역할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국가기관의 성격을 띤 중재위가 언론피해구제에 나섬으로써 국가기관 반론권을 과보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언론자유 침해와 규제, 통제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짚었다.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면에서 언론과 시민 양쪽 모두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언론자유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위가 사실상 공공기관으로서 언론분쟁 조정을 맡다 보니 민간 자율 기구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분쟁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모델이 기본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언론중재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니까 당사자들 간 자율적인 규제가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4].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타율규제가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 자율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5].

셋째. 언론중재란 제도를 권력기관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이 언론견제 수단으로 삼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끌어내면 그걸 내세워 기사 자체가 아예 오보라고 주

4) 심석태(2021)는 언론중재제도가 40년 정도 됐으니까 그냥 당연한 제도로 여겨 버리게 되면 언론의 자율규제 영역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봉현(2021)은 언론인 입장에서는 중재제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하는 피해구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이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키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해당 기사가 명백한 오보라는 의미가 아닌데도 신청인들이 오보로 선전한다는 것이다(오이석, 2021).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는 말 그대로 분쟁 당사 간의 조정 중재하는 기관인데, 정정보도를 내도록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사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6].

넷째, 언론중재제도가 1981년 신군부의 언론기본법 아래 만들어질 때부터 분명히 일종의 언론통제 목적을 띄고 있었고, 따라서 이 제도 자체가 언론자유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심석태, 2014).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언론보도의 수준이나 윤리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의 〈언론중재〉지와 관훈클럽의 〈관훈저널〉에서 그려지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모습은 빛과 그림자와 같이 매우 상반된 양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기실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부재를 가정하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시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지 모른다[7]. 만약 언론중재제도가 1981년 언론기본법에 포함되지도 않고 아예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언론중재법 도입이 없었다면 이수정(1981), 박용상(1981)이 말했던 '언론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뤄졌을까?[8]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언론

---

6) 이 경우 중재위에 의한 언론의 편집권 침해, 나아가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7) 이승선(2011)은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논문에서 "1981년 3월 31일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는 한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두 번의 큰 면접시험을 치렀다"면서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와 2005년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 절차의 폐지 등 두 차례의 경우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을 시도했다.

8) 한동원(1996)은 〈언론중재〉 1996년 봄호 '중재제도 운영 15년, 회고와 과제'에서 언론중재제도의 성과를 반사실적인 분석으로 접근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지난 15년을 회고해 볼 때 그동안 언론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실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해자인 언론의 자율적인 구제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언론중재제도가 발족한 시기인 80년대 초반까지 언론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언론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에 의한 구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윤리위원회나 매체 내 심의기구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율

의 자율규제는 어떤 진척이 이뤄졌을까? 한국 언론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나 해결되었을까? 한국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반사실적 분석틀로부터 제기되는 질문들은 한국 특유의 언론중재제도의 단순한 산출물(output) 이상의 진정한 성과(outcome)와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effect)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한다. 이러한 반사실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한국 언론중재제도의 해결과제, 나아가 언론중재제도를 낳게 했던 한국 언론의 문제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간헐적인 언론중재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들은 있었지만 40년간 이뤄진 언론중재와 관련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언론중재위가 지난 40년간 발행해온 저널 〈언론중재〉와 2015년 창간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그리고 일반 학술지에서 수집한 언론중재 관련 연구 400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박·석사 학위논문 54편은 별도로 분석했다.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장과 성과가 풍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정책적 기여도 또한 상당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빛나는 제도 뒤에는 빛나는 연구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제도의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연구 또한 빛과 함께 그늘진 부분도 있었을 터이다. 이 연구는 40년간 언론중재 연구의 주제별, 시기별, 연구자별 도드라진 성과와 함께 연구되지 못한 그늘진 부분도 탐색했다. 첫째,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언론중재제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언론의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가 위축된 문제, 둘째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를 강조한 언론중제제도의 성격에서 비롯된 풍성한 반론권 연구에 비교되는 언론자유 연구의 빈곤 현상, 셋째 법과 제도, 정책 분야연구에 비

적인 피해구제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해 신청인, 언론인, 중재인 등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 부족 문제를 탐구했다.

Ⅱ. 언론중재 연구 문헌검토

1. 언론중재 관련 메타분석 선행연구

언론중재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언론중재〉지를 분석한 이재진·박성순 (2015)의 논문은 상당 부분 언론중재 연구의 변천사를 포함하고 있다[9]. 이재진·박성순 (2015)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 때부터 발행한 〈언론중재〉에 실린 학술적 성격의 논문 508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1981년 겨울호(1호)부터 2012년 겨울호(125호)까지의 약 30년간에 게재된 논문이 분석대상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계간지인 〈언론중재〉는 언론법과 언론중재를 연구하는 법학과 언론학 분야의 다양한 필자들이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지난 40년간 게재함으로써 언론법 및 언론중재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분석결과는 〈언론중재〉가 전문학술지 보다는 언론윤리법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전문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예상대로 법조계 및 언론계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자로 다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법제 관련 학술저널들과 달리 언론학자가 법학자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한 사실도 관찰됐다. 전체 논문의 40.5%를 언론학자가, 19.7%를 법학자가, 14.6%는 언론 현업 종사자가, 18.7%는 법조계 종사자가 기고한

9) 이재진·박성순(2015)의 논문은 엄밀히 얘기하면, 언론중재 연구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 〈언론중재〉지 30년에 나타난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연구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언론중재〉를 분석한 점, 그리고 언론법제 연구에서 언론중재 연구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언론중재 연구의 변화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것으로 분석됐다.

‘명예훼손’, ‘언론자유/책임’,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질적 분석은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5개로 구분한 시기에 따라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론이 세분화, 다양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령, 언론중재제도 도입기(1980년대)에 해당하는 〈언론중재〉 발행초기에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개념 정립 연구와 관련한 국내외 중요 판례를 소개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들어 연구주제의 세분화, 연구방법의 다양화 속에 명예훼손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른 기본권들이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 관련 개념 정의의 변화 및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잊혀질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 연구에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 있는 메타연구로서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이승선(2018)의 논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창간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논문 326건과 2010년 2월 이후 제출된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125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법학 전공자가 지배적이었다. 언론학 기반 연구자는 석사학위 18.8%, 박사학위는 17.1%, 학술논문의 경우 19.0%로 나타났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대다수는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과 법〉 두 학술지에 게재됐다. 셋째, 인격권 주제 가운데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가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모두 폭넓게 연구되고 있었다. 넷째, 명예훼손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주제로 취급되었고 성범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다뤄지고 있었다. 다섯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의 증가추세가 눈에 띄었다. 여섯째, 가짜뉴스와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이승선, 2018, 87-88).

2. 언론중재제도 40년 역사와 시기 구분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10]는 1) 1981년 '언론기본법' 제정 2)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제정, 3) 1996년 정간법 개정, 4)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5)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등 법제적으로 중요한 변환 시기를 거치면서 시기별로 성공과 실패 경험, 그리고 해결과제를 남겼다(이승선, 2011).

중재위 제도는 1981년 도입부터 사실 순탄한 노정을 겪어 온 것은 아니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81년 3월 31일 설립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인 언론통폐합 조치와 동시에 추진된 '언론기본법'안에 언론중재제도가 신설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초기 제도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1981년 관련법에서 규정한 '정정보도 청구권'의 표현 또한 사실은 '반박보도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정보도와 반박보도의 구분에 대한 혼선의 시행착오를 포함하고 있었다.[11]

1987년 11월 29일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법에 중재제도가 규정되었다. 변화는 1) 중재부장이 필요한 경우를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언론중재 절차의 강화, 2) 범죄사건 관련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언론사에 추후 사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 도입, 3) 해당

10) 이 절의 언론중재법과 제도의 변천사 부분은 이승선(2021)의 연구의 관련 부분을 요약 인용했음을 밝힌다.

11) 대법원 1986.1.28.선고 85다카1973판결.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제목의 표현과 달리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며, 권리의 제목을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판시했다.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까지 피신청인에 확대 포함 등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정이나 반론을 게재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로서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신청인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중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81년 1995년까지 15년간 총 2,802건의 중재신청사건 중 722건(26%)만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이를 시사한다(김해도, 1996).

1995년 12월 30일 정기간행물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하였고,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롭게 도입,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기관·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범위 확대, 3) 직권중재결정권 도입 등 언론중재제도의 위상과 기능을 한층 강화, 발전시켰다.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 흩어져 있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을 망라하여 규율하는 통일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변화는 1) 기존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조정·중재신청 가능 2)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 신청 시 자동 소 제기 간주 3)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외에 인터넷신문까지 조정의 대상매체를 확대, 4)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연장, 5)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 제기 위해서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항 삭제 등 권리구제 조항을 확대했다.

2009년 2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은 포털, 언론사닷컴, IPTV를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상의 기사를 삭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권리와 잘못된 기사의 복제,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 등 해결과제에 대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이승선, 2021).

언론중재제도의 변천 역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그 시기 구

분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승선(2021)은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과 방송법에 존치될 때, 1996년 입법취지를 반영해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로잡을 때, 2005년 ‘언론중재법’을 제정할 때 그리고 2009년 포털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규율할 때 등을 대표적인 변혁기”라고 보았다. 이재진(2015)은 도입기(1980. 12~1987. 11) – 과도기(1987. 11~1995. 12) – 정착기(1995. 12~2005. 1) – 성장기(2005. 1~2009. 2) – 확장기(2009. 2~현재)로 시기별로 명명함으로써 변천과정에 의미 부여를 시도했다. 5단계 (언론기본법–정간법/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정간법/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 언론중재법 제정 – 언론중재법 개정) 각 시기별로 언론중재제도의 근거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연구 주제의 세분화,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다르게 진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양재규(2021) 또한 이재진(2015)의 시기구분에 따라 언론중재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표 2〉.

〈표 2〉 언론중재제도의 시기별 발전 과정

시기	근거법	위원 정수	대상 매체	청구권	절차
도입기 (1980.12~1987.11)	언론 기본법	30-60인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반론보도청구권	필요적 전치
과도기 (1987.11~1995.12)	정간법 방송법	40-70인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CATV 추가)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합의 간주
정착기 (1995.12~2005.1)	개정 정간법 방송법	40-80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직권조정 결정
성장기 (2005.1~2009.2)	언론 중재법	40-90인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임의적 전치 중재절차 신설
확장기 (2009.2~현재)	개정 언론 중재법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IPTV		

* 출처: 양재규(2021, 49).

Ⅲ. 연구문제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언론중재제도연구 40년의 양적 질적 성과는 무엇인가? 언론중재제도 40년 동안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저널에서 언론중재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중재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도 분석한다. 이재진·박성순 (2015)의 연구와 이승선(2018, 2021)의 연구가 보여준 언론법, 인격권, 명예훼손 분야에서의 연구자별 분석, 학위논문 성과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고 비교하면서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언론중재 관련 연구주제별 현황은 어떠하고 5개 시기에 따라 연구주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언론중재〉지 1981년 창간 이후부터 2012년까지를 분석한 이재진(2015)의 연구는 언론중재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계기마다 관련 연구주제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이 연구는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 연구의 주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구한다. 이 연구는 5개 시기에 따라 언론중재에 관한 연구주제를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하여 주제별 변천사를 탐구할 것이다.

셋째, 언론중재 연구 40년 동안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연구주제는 무엇이었나? “언론중재위원회의 목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어떤 규제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언론활동과 개인법익과의 조화에 있다”(유승삼, 1981, 98)는 주장이 외형적 대세를 이루고 있고,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도 이런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언론중제 제도가 사실상 국가기관이 언론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으로 국가기관 반론권 과보호 및 언론자유 위축, 언론규제 및 통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허만섭, 2010; 심석태, 2014).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조치라는 주장이 계속 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이재진, 2015). 1981년 언론중재제도는 잘못된 언

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른바 언론통폐합의 근거법률이었던 언론기본법 체계에서 생겨남으로 인해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 규제 및 관리의 방편이 될 가능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해 왔다. 언론중재제도의 성장과 타율적인 피해구제 성과의 이면에는 언론의 자율규제 동기가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 연구에서 언론의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가 약화되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언론중재의 피해구제 목적이 강조된 나머지 언론중재 과정에서 인격권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언론자유 연구는 상대적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탐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 연구자와 연구의 성격상 법과 제도,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면서 신청인, 언론인, 중재인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 탐색한다.

Ⅳ.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언론중재 연구 40년의 메타분석을 위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 이후 40년간 발행한 〈언론중재〉지, 그리고 2015년 이후 발행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언론중재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들 추출했다[12]. 다음으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ris.or.kr)와 학술검색서비스 디비피아 홈페이지((http://www.dbpia.co.kr)에서 '언론중재' 검색어 색인을 통해 학술지 논문을 추출한 뒤, 〈언론중재〉지와 〈미디어와 인격권〉 출처 논문 이외의 연구를 선별했다. 이재진·박성순

12)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출범 이후 〈언론중재〉지를 발행해 오다, 2015년부터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행하면서부터 〈언론중재〉지를 잡지식 편집으로 전환했다.

(2015)의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실시했던 〈언론중재〉지는 1981년 봄호부터 2021년 가을호까지 총 1천2건의 글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일반 현황, 보고서 및 세미나 요약, 관례 등 최근 사례 단순 소개, 칼럼 형식의 글 등을 제외하고 개념 정의와 분석 등이 포함된 학술적 성격의 글 305편을 선택했다. 언론중재위가 2015년부터 발행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언론중재제도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언론법 관련 연구와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제외한 39편을 선택했다. 최종 분석대상 연구물은 〈언론중재〉지 연구물 305편(76.1%).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39편(9.7%). 일반 학술지 논문 56편(13.9%), 총 400편으로 구성했다.(〈표 3〉 참조.)

언론중재 연구 관련 박사와 석사 학위 논문은 국회도서관 검색 홈페이지에서 '언론중재' 검색어로 색인하여 별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한 세미나와 관련 학회에서 발표한 발제논문과 언론중재와 관련된 도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3〉 메타분석 대상 논문의 출처 분류

출처 구분	편수	비율
〈언론중재〉	305	76.2
〈미디어와 인격권〉	39	9.8
일반 학술지	56	14.0
전체	400	100.0

2. 주제/소주제 분류: 토픽모델링, 휴먼코딩

언론자유와 개인의 권리 침해간의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등 언론법제 분야 주제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의 취재관행, 국가권력의 작용 등 다양한 주제들이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언론중재〉지를 메타분석 한 이재진·박성순(2015)의 연구는 연구주

제를 크게 기본법, 응용 부분, 온라인/포털, 정책/기타로 구분하고, 대주제별로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명예훼손 관련 논문(18.9%), 반론권 논문(17.3%), 프라이버시(10.2%),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9.1%)에 관한 논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제분류는 〈언론중재〉지가 취사선택 편집한 글들의 주제의 성격과 분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론중재 관련 논문들의 주제들을 메타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주제분석틀의 도출 근거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 4〉 〈언론중재〉지 메타분석을 위한 주제분석틀 (이재진·박성순, 2015, 228.)

연구주제		빈도
기본법	법적 체계의 이해	19(3.7%)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46(9.1%)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	14(2.8%)
응용부분	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	56(11%)
	재판과 선거보도	39(7.7%)
	명예훼손	96(18.9%)
	프라이버시	52(10.2%)
	반론권	88(17.3%)
	성표현물	5(1%)
	저작권	–
온라인/포털	UCC 사용자제작콘텐츠	1(0.2%)
	포털, OSP, ISP	5(1%)
정책/기타	방송뉴미디어정책	3(0.6%)
	저널리즘	20(3.9%)
	기타	64(12.6%)
합계		508(100%)

이 연구에서는 주제분석 틀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군집화하고 분류되는지 탐색하였다. 토픽모델링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하나로 방대한 문헌들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그룹화해서 문헌들에 나타난 주제들을 찾아내 주

는 알고리즘이다. 이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반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토픽을 분석했다. LDA는 디리클레 확률 분포(Dirichle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서의 토픽과 단어 대한 확률값을 추정함으로써 각 토픽과 관련한 모든 단어를 찾아내 준다(Blei, 2012; Blei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먼저 400건의 연구물의 제목과 초록 등에 대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미디어 변화, 자유와 책임' '언론보도의 문제' '언론중재절차' '언론중재 법과 제도' '인격권' '중재 대상 및 기준', '피해구제' 등 7개의 토픽 주제를 도출했다(〈표 5〉 참조.)

〈표 5〉 토픽모델링에 의한 주제 분류 도출 (7개 토픽)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미디어변화 자유와책임	**언론보도 문제**	**중재절차**	**중재법제도**	**인격권**	**중재 대상과기준**	**피해구제**
인격권	기사	미국	언론중재	프라이버시	공인	정정보도청구
자유	취재	한국	중재제도	권리	판결	행사
인터넷	변화	언론보도	언론중재위	사생활	공적인	독일
책임	문제점	분석	제도	잊혀질권리	대법원	반론보도
표현	윤리	소송	언론조정	초상권	대상	구제제도
한계	구제	손해배상	피해구제	위법성	국내	산정
보호	인권	의미	조정	사생활권	기준	정정보도
쟁점	자율규제	청구	법률	현장	면책	신설
규제	유형	판례	분쟁	모색	가능	기사삭제
법제	범죄보도	재판	해결	명예훼손죄	악의론	명예훼손소송
미디어	환경	기능	ADR	관점	명예	개선방안
적용	역사	절차	평가	상당	신문	판결

다음으로, 연구자는 400건의 논문들에 대한 제목, 주제어, 초록 등을 검토하면서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7개 주제에 맞춰 분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반론권 활용'주제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모두 9개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9개의 대주제는 '언론중재법과 제도',

‘인격권’, ‘피해구제’, ‘언론문제’, ‘언론자유’, ‘국가기관의 대응’, ‘중재대상과 기준’, ‘중재절차’, ‘미디어변화’로 구성됐다. 대주제에 따른 하위 소주제 코딩은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대주제와 개념적 연관성 등을 감안하면서 개별 연구논문을 분류, 재분류 과정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70개의 소주제 군집을 도출했다. 하나의 논문이 다양한 대주제와 소주제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목과 초록, 주제어의 순서 등을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비중이 높은 쪽의 주제 하나만 선택하여 분류했다. 대주제와 소주제별 분석틀과 대주제별 연구물 수 집계표는 〈표 6〉과 같다. 수집된 논문 400편 가운데, 주제별로 ‘피해구제(16%)’ ‘인격권(15%)’ ‘중재대상, 기준(15%)’ ‘언론중재 법과 제도(13%)’ ‘중재절차(4%)’ 등 피해구제와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논문이 약 63%를 차지하였고,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문제(15%)’ ‘미디어변화(14%)’에 관한 논문은 약 29%로 나타났다. ‘언론자유(7%)’ ‘국가기관의 대응(1%)’을 다룬 논문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6〉 토픽모델링과 휴먼코딩을 결합한 최종 주제 분류표(대주제/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논문소계	백분율
언론중재 법과제도	ADR, 개선방안, 비교, 중재법의 성격 및 위헌성, 성과, 역사, 자율규제	52	13%
인격권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 사생활, 잊혀질권리, 초상권	59	15%
피해구제	기사삭제, 명예훼손소송,반론권, 반론보도, 사전제한, 손해배상, 정정보도, 추후보도	64	16%
언론문제	감염병보도, 방어저널리즘, 범죄보도, 사법보도, 선거보도, 세월호보도, 언론윤리, 언론침해,연예보도, 정정보도, 취재관행	61	15%
언론자유	공익언론, 상당성, 악세스권, 알권리, 언론관계법, 언론대항, 위법성조각	29	7%
국가기관	반론권활용, 언론대응, 피해자자격	5	1%
중재 대상,기준	가짜뉴스, 고의, 공인, 공적사안, 댓글, 드라마패러디, 비평, 사실성객관성, 언론범위, 의견, 퍼블리시티권, 현실적악의, 혐오표현	60	15%

대주제	소주제	논문소계	백분율
중재절차	시정권고, 신청인, 조정,조정전치, 직권조정, 직권중재, 청구기간	14	4%
미디어 변화	광고, 뉴미디어,데이터, 드론모바일, 소셜, 알고리즘 언론범위, 인공지능, 인터넷, 케이블TV, 포털	56	14%
		400	100%

Ⅴ. 연구 결과

1. 언론중재연구 40년의 성과

가. 언론중재 연구의 저널 및 시기별 주제/소주제 분석

언론중재에 대한 논문 및 연구물은 주로 언론중재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 지와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학보〉와 〈언론과법〉, 법학 관련 일반 학술지에 언론중재 논문이 게재된 것은 주로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하는 이승선(2018)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7〉 저널 종류에 따른 시기별 연구물 빈도

	1 81-87	2 88-96	3 96-05	4 05-09	5 09-21	**총합계**
언론중재	55	55	91	29	74	304
미디어와 인격권					39	39
학술지	1		2	11	43	57
총합계	56	55	93	40	156	400

나. 석·박사 학위논문

언론중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198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박사 7명, 석사 47명이 배출됐다(박·석사 학위논문 내역은 〈부록표1〉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박사학위자 7명 중에 6명이 언론 관련 학과에서 학위논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언론중재제도라는 주제가 법학 분야에서 협소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석사학위자 47명 가운데 법학 전공은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석.박사 논문 중에는 언론중재를 통해 나타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다룬 논문이 다수 눈에 띄는 것은 학위논문이 생산되는 학과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위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은 한양대와 동국대가 각각 7명의 학위자(박사 2, 석사 5)를 배출했고, 연세대 석사 8명, 서강대 석사 5명, 중앙대와 경희대가 각각 석사 4명, 광주대 석사 3명 순이었다.

다. 언론중재 연구자 분석

언론중재와 관련된 분석대상 연구물 4백편의 저자 수는 총 275명으로 집계된다. 5편 이상을 기고한 저자는 8명(이승선, 염규호, 이재진, 박용상, 성낙인, 한위수, 김재협, 팽원순)이다. 2~4편 기고자는 45명, 1편 기고자는 2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 연구 40년 동안 이 분야 주요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염규호 교수는 초창기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언론법과 언론중재 제도 연구에 향도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염 교수는 1990년 〈언론중재〉 겨울호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수계'로부터 2014년 봄호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제 1수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등 인격권에 관한 미국의 판례를 국내에 집중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공직

자, 공인과 관련된 논문들은 우리나라 언론법과 언론중재 제도에서 공인 이론을 적용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재진, 2015). 이 밖에도 언론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현실적 악의' 원칙, 언론사가 인격권 침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어 저널리즘' 개념 등을 소개하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13)]

언론중재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상 변호사는 1981년 〈언론중재〉 창간 겨울호에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정정보도청구권과 같은 피해구제 및 중재절차, 명예훼손, 언론의 익명보도의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14)]

13) 〈표 9〉 염규호의 언론중재 연구 사례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수계	1990	언론중재
미국의 언론법과 사법제도 –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사건의 관점에서 –	1994	언론중재
미국의 명예훼손법 – 판례를 중심으로	1994	언론중재
미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 헌법이론과 학설을 중심으로 –	1994	언론중재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와 언론의 자유 –판례를 중심으로 –	1994	언론중재
미국의 명예훼손법 : 손해배상청구의 이론적 분석	1996	언론중재
미국의 명예훼손법 : 손해배상의 판례분석	1996	언론중재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1999	언론중재
방어 저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2001	언론중재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2001	언론중재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제1수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	2014	언론중재

14) 〈표 10〉 박용상의 언론중재 연구 사례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1981	언론중재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1987	언론중재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일반적 고찰	1989	언론중재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1991	언론중재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1991	언론중재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2003	언론중재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2017	언론중재

〈표 8〉 언론중재 주요 연구자별 연구주제 분포 (3편 이상 연구자)

저자 /대주제	국가 기관	미디어 변화	법제도	언론 문제	언론 자유	인격권	중재 대상	중재 절차	피해 구제	총 합계
이승선	1	1	4		3		4			13
염규호				1	1	5	2		2	11
박용상			2	1			1		3	7
성낙인		2				2			3	7
한위수				1		4	1			6
김재협				2			1		2	5
이재진		3	1						1	5(10)
팽원순			1	1	1	1			1	5
강경근		2				1	1			4
김창숙		1	2	1						4
서정우			3	1						4
양재규			2	2						4
정진석			3	1						4
한동원			3						1	4
함석천		1				1	1		1	4
황성기		3		1						4
김병국			1		1				1	3
문재완			2				1			3
양경승			2						1	3
양삼승									3	3
윤성옥		1					2			3
이수종							1		2	3
이혜복			1	2						3
장영수					1		2			3
전광백				1					2	3
조준원								1	2	3
한병구			1			1			1	3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한 반론권과 인격권,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연구를 다수 게재한 주요 연구자들로는 법학전공자 가운데 성낙인, 한위수, 양삼승 등으로 나타난다.[15]

국내 언론법 전공자 가운데 언론중재를 중점 연구한 학자로는 단연 이승선과 이재진이 도드라진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400건 가운데, 이승선이 13건, 이재진은 공동연구 5건을 포함하여 10건의 연구를 게재했다. 이승선은 2011년 〈언론중재〉에 '언론조정 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2021년 〈미디어와 인격권〉에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2017년 〈언론과 법〉에 '한국 공인 연구 30년: 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와 같은 언론중재 및 언론중재 연구 역사에 관한 메타분석 시도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의 언론대응 방식 특성과 함의: 대전광역시 2012-2013' (방송통신연구, 2011), '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미디어와 인격권, 2019) 등 지자체나 정부, 사업자들이 언론중재제도나 소송을 이용하여 언론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16]

---

15) 〈표 11〉 성낙인의 언론중재 연구 사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법제의 정립과 언론	1995	언론중재
선거보도와 반론권	1997	언론중재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1999	언론중재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2001	언론중재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2002	언론중재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2018	미디어와인격권
사회변동과 표현의 자유	2020	공법학연구

〈표 12〉 한위수의 언론중재 연구 사례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언론	1994	언론중재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판례와 쟁점	1998	언론중재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1998	언론중재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99	언론중재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2004	언론중재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 차단 사유에 대한 고찰	2007	사법

이재진은 2000년 〈언론중재〉에 게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격권과 피해구제 문제를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최근 연구들 말고도 그동안 다수의 언론법과 언론중재에 관한 서적을 출판했다. 2002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을 비롯하여 〈명예훼손 소사전〉(2003),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6),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2009), 〈미디어 법〉(2013), 그리고 2015년에는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을 출간했다. 〈언론중재〉지에 나타난 언론법제 연구 경향을 메타분석한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커뮤니케이션 이론, 2015)도 박성순과 공동 연구했다.[17]

16) 〈표 13〉 이승선의 언론중재 연구 사례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2003	언론중재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2005	커뮤니케이션이론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본 취재윤리	2006	언론중재
알 권리와 명예훼손 면책 논쟁	2009	언론중재
언론조정 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2011	언론중재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2011	방송통신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언론대응 방식 특성과 함의: 대전광역시 2012-2013 사례를 중심으로	2014	사회과학연구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	2016	언론중재
영상취재 및 보도영역의 신기술 활용과 인격권 침해문제-드론,모바일폰,블랙박스,CCTV를 중심으로	2017	미디어와인격권
한국 공인 연구 30년: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	2017	언론과법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분석을중심으로)	2018	미디어와인격권
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2019	미디어와인격권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2021	미디어와인격권

이밖에도 한상범(1986, 언론중재)의 '언론보도와 공인' 논문은 공인이론에 관한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고, 손동권(1992, 언론중재)의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논문은 사자의 명예훼손 개념의 소개로, 이동훈(2002, 공법학연구)은 일찌기 디지털 사회에서의 언론자유의 가치의 확립에 관한 최초의 논의를 한 것으로 기록된다(이재진, 2015).

2. 5개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경향

시기별 연구주제는 언론중재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권력과 언론 갈등을 포함한 정치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며 부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언론 관리에 나서는 현상은 적은 수의 연구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연구는 90년대 케이블TV의 등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 최근의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드론 등의 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중재법과 제도 주제는 언론중재도입시기인 1980년 초반과 위헌

17) 〈표 14〉 이재진의 언론중재 연구 사례 (* 공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8	언론중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2000	언론중재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2002	언론중재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2003	언론중재
주요국가의 언론피해 구제방식 비교 고찰	2011	언론중재
인터넷상의 반론권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2008	언론과법
언론의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 근거로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	2012	정보법학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2015	커뮤니케이션이론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2008	방송통신연구
언론중재 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2004	한국언론학보

논쟁이 있었던 2005년 이후에 언론중재제도의 성격과 위헌성에 대한 논문의 등장 빈도가 높았고,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로서 언론중재 연구는 2009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언론중재개정안 논란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언론의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말 민주화 직후에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중재와 관련한 언론의 여러 문제에 관한 연구는 제도 도입기에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범죄보도와 재판보도, 세월호, 감염병 등 보도유형별로 취재보도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대다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권리침해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취재관행의 문제도 1996-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피해구제 제도에 대응한 언론의 방어저널리즘 개념 연구는 염규호 교수의 제안적 연구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언론자유 주제에 관해서는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언론자유의 문제를 다룬 연구 중심으로 게재됐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언론의 대응과 대항에 관한 논문도 초창기부터 수행되어져 왔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언론의 면책 조항이랄 수 있는 위법성조각과 상당성 개념에 관한 논문도 상당수 게재됐고, 언론자유의 이론적 기반인 알권리와 악세스권에 대한 논문도 시기에 따라 다른 빈도로 게재됐다. 개인의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개념으로서 공익언론[18]에 관한 논문 4편도 눈에 띈다.

언론중재 관련 연구들은 중재제도의 변천 시기별로 나름대로 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

18) '공익언론' '언론의 공적 책임론'은 원래 신문이나 방송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언론이 국민의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적 책임론은 본래 1920년대 독일의 일부 헌법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지만 그것을 실정법으로 처음 이용한 것은 나치 정권이 1930년대에 언론통제를 위해 제정한 '기자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팽원순, 1989: 이재진, 2015 재인용). 팽원순(1989)은 언론기본법을 비판하면서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공적 책무'이론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이론이 위정자의 비위에 맞아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한다(이재진, 2015)

진·박성순, 2015).

1981년 언론중재 도입기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미국 사례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다가 1990년대 정간법에 언론중재제도가 포함되고 중재절차 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쟁점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고,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행해졌다.

언론침해로부터 보호대상이 되는 '인격권'에 관한 연구는 사생활보호(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초상권 관련 연구가 꾸준하게 이뤄져 왔고, 최근 들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재대상 및 기준 주제에 관해서는 '공인'과 '공적사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보도의 사실성과 객관성, 의견 여부, 고의, 현실적 악의 등 중재 기준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시기에는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댓글, 퍼플리시티권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피해구제 주제에 관해서는, 반론권과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비중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연구는 손배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전후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데이터시대를 맞아 최근 '기사삭제 청구권'에 대한 연구가 급증세이다.

〈표 15〉 시기별 연구주제의 분포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국가기관				1	4	5	(100)
반론권활용					2	2	40
언론대응				1	1	2	40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피해자자격					1	1	20
미디어변화		2	12	10	32	56	(100)
광고					1	1	2
뉴미디어			2		2	4	7
데이터					1	1	2
드론모바일					1	1	2
소셜					4	4	7
알고리즘					1	1	2
언론범위			1		1	2	4
인공지능					1	1	2
인터넷			9	5	18	32	57
케이블TV		2				2	4
포털				5	2	7	13
법제도	8	9	9	7	19	52	(100)
ADR					5	5	10
개선방안		2	1		2	5	10
비교	2		1	1	3	7	13
성격위헌성	2			4	1	7	13
성과			1		3	4	8
역사	3	4	5	1	5	18	35
자율규제	1	3	1	1		6	12
인격권	14	10	9	4	22	59	(100)
개인정보보호		1			2	3	5
명예훼손	4	5	2	1	3	15	25
사생활	7	4	5	1	1	18	31
잊혀질권리					13	13	22
초상권	3		2	2	3	10	17
중재대상/기준	7	6	19	1	27	60	(100)
가짜뉴스					3	3	5
고의		2			1	3	5
공인	2		7	1	5	15	25
공적사안		1			1	2	3
댓글					3	3	5
드라마패러디					2	2	3
비평			3			3	5
사실성객관성	1	1	1		1	4	7
언론범위					2	2	3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의견		1	5		2	8	13
퍼블리시티권					4	4	7
현실적악의	4	1	3			8	13
혐오표현					3	3	5
피해구제	6	17	16	7	18	64	(100)
기사삭제					5	5	8
명예훼손소송	1	2	1			4	6
반론권	3	6	2	1		12	19
반론보도			9		1	10	16
사전제한					1	1	2
손해배상		1	4	3	8	16	25
정정보도	2	7		3	2	14	22
추후보도		1			1	2	3

3. 언론중재연구의 그림자 영역

언론중재 연구의 대주제와 소주제별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가 진행된 3개 주제 분야를 발견하고 언론중재 연구의 해결과제 차원에서 논의했다.

첫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 성과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율규제 기능의 축소와 함께 언론 자율규제 연구가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중재제도가 초창기부터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와 인격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격권과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빈약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언론중재 연구가 언론법과 제도 영역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언론중재 과정에서의 신청인, 언론인, 중재인의 행위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가. 한국의 자율규제 연구 위축 현상

1981년 언론기본법 체제 아래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될 당시 한병구(1981)는 그해 겨울 〈언론중재〉 창간호에서 “오늘날 매스컴의 대중파급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언론윤리강령의 준수는 꼭 실천되어야 한다”면서 “일부 보도기관이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데서 각종 규제기구가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율규제의 미흡한 작동으로 인해 타율규제 성격의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시사했다. 같은 〈언론중재〉 창간호에 ‘외국의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기고한 서정우(1981)는 언론통제 역사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사회·문화적 통제 →구조적 통제 →자율 통제 형태로 진화, 발전되는 것 같다면서, “자율규제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중재를 자율이든 타율이든 일종의 규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송 이전에 중재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규제기구보다는 갈등조정기구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에 대해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 및 규제를 가능케 한 헌법적 연원에서 언론중재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는 비판적 주장이 대립한다. 심석태(2014)는 헌법에서 명예 등에 대한 침해 금지 조항이 5.16쿠데타를 일으킨 제3공화국 헌법에서 등장했으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12.12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제5공화국 헌법에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 또한

19) 언론중재제도를 타율규제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한 분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제도가 출범할 당시 〈언론중재〉 1981년 창간호에서 언론에 대한 타율규제와 자율규제 차원에서 논의한 흔적이 있고(한병구, 1981; 서정우, 1981), 이후에도 언론중재 제도 시행에 따라 언론의 자율규제가 위축되는 현상에 근거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에 대한 타율규제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입장이다.

12.12로 집권한 신군부가 국보위를 통해 만든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손쉬운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만든 언론 규제 및 통제 성격의 제도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 도입 40년째를 맞이하는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언론중재법에 포함하여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는 정치권력이 언론중재의 성격을 '타율규제 제도'로 여기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6〉 언론중재 법과 제도 연구와 자율규제 연구 추이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ADR					5	5	10
개선방안		2	1		2	5	10
비교	2		1	1	3	7	13
성격위헌성	2			4	1	7	13
성과			1		3	4	8
역사	3	4	5	1	5	18	35
자율규제	1	3	1	1		6	12
법제도(소계)	8	9	9	7	19	52	100

〈표 16〉가 보여주는 지난 40년간 언론중재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 추이는 언론중재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언론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는 6편에 불과하고, 그것도 전반부 초창기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율규제 미작동을 빌미로 도입한 언론중재제도가 성장, 확대되면서 언론의 자율규제 노력은 더욱 시들해지고, 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계에서 실질적인 언론의 자율규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위축된 언론의 자율규제 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나. 언론자유 연구의 빈곤

언론역사학자 정진석(1994)은 〈언론중재〉 1994년 봄호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 연구의 변천' 논문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80년을 고비로 그 이후부터는 언론의 책임, 개인의 명예훼손, 언론침해의 구제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면서 중재제도가 도입된 1980년 초가 언론자유 연구가 하락하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언론중재 연구 메타 분석에서도 논문 400편 중에 언론 관련 연구는 저널리즘의 윤리 규범적 잣대를 들이대며 한국 언론보도와 취재 관행의 문제점을 비판한 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편, 15%). '언론자유'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총 29편으로 400편중에 7%를 차지했으며, 세부 주제분포를 보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론의 면책 조항이랄 수 있는 위법성 조각과 상당성 개념, 그리고 언론자유의 이론적 기반인 알권리와 악세스권 등 언론법 이론과 법리에 관한 논문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언론분쟁조정과정에서 언론의 존재 양식, 그리고 언론자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고 또는 위축되는지에 대한 언론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17〉 언론문제 및 언론자유 관련 연구 추이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감염병보도					2	2	3
방어저널리즘	1	1	2	1		5	8
범죄보도	1	3	2		6	12	20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사법보도	3	1	1		2	7	11
선거보도			1			1	2
세월호보도					3	3	5
언론윤리			2		1	3	5
언론침해	7		2	3	3	15	25
연예보도			1			1	2
정정보도			1			1	2
취재관행	1	2	6	2		11	18
언론문제(소계)	13	7	18	6	17	61(15%)	(100)
공익언론	2		2			4	14
상당성			1	1	1	3	10
악세스권	1				1	2	7
알권리					2	2	7
언론관계법	2	1	2	1	2	8	28
언론대항	2	2		1	1	6	21
위법성조각		1	3			4	14
언론자유(소계)	7	4	8	3	7	29(7%)	(100)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된 인격권과 보도하는 언론사의 언론자유 간의 충돌과 갈등, 분쟁을 중재 조정을 통해 두 가치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인격권에 대한 연구는 59편(15%)을 차지고 하고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잊혀질권리, 초상권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가 축적된 편이다. 그에 반해 인격권 침해에 대응하는 언론자유는 무엇이고 언론자유는 어떻게 보호되고,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중재제도 도입 당시부터 언론침해에 의한 피해구제를 신속 편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언론보도 내용'이나 '언론자유'는 크게 고려조차 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1981년 언론기본법안에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될 때 언론보도는 "언론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정도로 취급당했다(박용상,1981)[20].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4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 법제와 그 운영에 나타난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를 분석한 조소영(2021, 56-57)의 연구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새로운 피해구제제도들은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구조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법에 관한 선택지를 다양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언론중재법이 무엇이 명예인가를 고민했던 것에 비해 무엇이 언론인가(특히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전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하여 언론 법학계의 축적된 연구력에 힘입어 이론적 법리적 실무적 차원에서 개정안의 도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선행되었어야 할,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자유 보호 및 신장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 또는 반대로 언론자유 위축 효과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찾기 힘들다. 또한 언론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제로 언론자유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 연구도 찾기 어렵다.

다. 신청인-언론인-중재인 연구 공백

언론중재 현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된 언론인, 그리고 중재인들의 불평불만 볼멘소리가 들려오는데, 언론중재연구 40년은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중재에 관여하게 된 사람들의 행위와 활동에 대한 탐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 18〉과 같이, 지난 40년간 언론중재절차에 관한 연구는 그야말로 과정과 절차에

20) 박용상(1981)은 1981년 〈언론중재〉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반론권 제도는 언론의 공적 과업 개념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언론이 행하는 여론형성의 기능에 대하여 그 전제가 되는 진실발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공공 즉 독자는 언론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만을 믿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까지 들을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신청인에 관한 연구 3편, 그리고 중재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한다.

〈표 18〉 중재절차 및 신청인에 관한 연구 추이

시기/ 주제,소주제	1시기 1981 -1987	2시기 1988 -1996	3시기 1996 -2005	4시기 2005 -2009	5시기 2009 -2021	합계	소주제별 백분율 (%)
시정권고					3	3	21
신청인	1				2	3	21
조정				1	2	3	21
조정전치			1			1	7
직권조정					2	2	14
직권중재			1			1	7
청구기간					1	1	7
소계	1		2	1	10	14	(100)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속 편리하게 비용 없이 언론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이자 상대편인 언론의 영향력이 조정 중재 과정, 그리고 사후에도 작용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언론중재 신청을 한 신청인들은 실제로는 언론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구하기보다는 언론으로부터의 신속한 사과 등의 조치를 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재진·정영주, 2007).

언론인 출신으로 중재위원과 언론연구원장을 지낸 한동원은 1996년 〈언론중재〉 봄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언론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피해자인 신청인은 피해가 회복되기 전에는 물러서지 말고 법정에까지 간다는 강경한 자세로 피신청인에게 대응해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언론은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따라서 도중에 포기하는 따위의 약세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한동원, 1996).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중재가 언론자유 보다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중재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이 합의 종용하기도 하고, 반론 보도를 허용하면, 이제 신청인이 그것으로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데 활용하기 일쑤다(오이석, 2021). 언론인들은 한국 언론이 사실확인 잘 안하고 취재 과정에서 반론 잘 안 들어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언론중재를 통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언론중재 과정에서는 순간을 모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언론 자율규제에 비교되는 언론중재제도의 언론 자정 효과의 한계이기도 하다. 언론중재는 오히려 언론자유 위축 효과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언론인들은 말한다. “기사의 맥락이나 취재 내용과 다른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스크와 기자는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과 내용,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요구받는다. 이 경우 준비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 관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기자가 사건의 당사자로 바뀌면서 이후 다루는 기사에서 자기검열의 늪에 빠지는 셈이다. 실제로 언중위 제소나 소송 경험이 있는 기자의 경우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오이석, 2021).

언론중재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의심을 받기 일쑤다. 우선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현행 추천제로 선발된 중재위원이 다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김옥조, 2012, 660-662). 그래서 중재부장은 현역 법관이 맡도록 했지만 언론인 출신 또는 언론분야 전공 교수 등이 과연 인격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지와 절차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사건인데도 중재부에 따라 중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마저도 중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나 중재의 전문성과 일관성, 공정성 등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의 언론중재 개정안은 이런 빈틈을 노려 언론중재위원을 국가가 임명하겠다고 나서는 역행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Ⅵ.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저널 〈언론중재〉와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그리고 일반 학술지에서 '언론중재' 색인으로 추출한 연구물 400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언론중재 관련 학위논문은 별도로 분석했다. 주제분석 틀은 토픽모델링기법과 휴먼코딩 작업을 거쳐, 언론중재법과 제도, 인격권, 피해구제, 언론문제, 언론자유, 국가기관의 대응, 중재대상 및 기준, 중재절차, 미디어변화 등 9개 대주제와 70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했다. 분석 시기는 선행연구를 따라 5개 시기로 나눠서 분석했다.

언론중재 연구 40년 성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중재에 대한 논문 및 연구물은 주로 언론중재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 지와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과법〉과 〈언론학보〉 등 일반 학술지의 언론중재 논문은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 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중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박사 7명, 석사 47명 등이 배출돼 언론중재제도 연구가 하나의 전공 분야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언론중재와 관련된 분석대상 연구물 4백 편의 저자 수는 총 275명으로 집계된다. 5편 이상을 기고한 저자는 이승선, 염규호, 이재진, 박용상, 성낙인, 한위수, 김재협, 팽원순 등으로 주요 연구자군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는 언론중재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미디어 환경 변화, 대통령과 언론 간의 갈등 등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 연구는 90년대 케이블TV의 등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 최근의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드론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는 연구수의 증감에 반영됐다. 둘째, 법과 제도에 관한 주제는 도입 시기인

1980년 초반과 위헌 논쟁이 있었던 2005년 이후에 활발한 연구가 수행됐고, 2009년 이후에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로서 언론중재 연구가 활발해졌다. 셋째, 언론자유 주제 연구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론의 면책 조항이랄 수 있는 위법성 조각과 상당성 개념 논문, 언론자유의 이론적 기반인 알권리와 악세스권에 대한 논문이 시기에 따라 다른 빈도로 게재됐다. 개인의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개념으로서 공익언론에 관한 논문 4편도 눈에 띈다. 넷째, 인격권 주제와 관련해서 사생활보호(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초상권 관련 연구가 꾸준하게 이뤄져 왔고, 최근 들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의 영구 보존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피해구제 주제에 관해서는, 반론권과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비중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연구는 손배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전후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데이터 시대를 맞아 최근 기사삭제 청구권에 대한 연구가 급증세이다. 여섯째, 중재대상 및 기준 주제에 관해서는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보도의 사실성과 객관성, 의견 여부, 고의, 현실적 악의 등 중재 기준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시기에는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댓글, 퍼플리시티권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 언론중재 연구 40년 동안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연구주제를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0년간 언론중재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 추이는 언론중재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언론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고, 그것도 전반부 초창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1년 당시 언론의 자율규제 미작동을 빌미로 도입한 언론중재제도가 성장, 확대되면서 언론의 자율규제 노력은 더욱 시들해지고, 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

계에서 실질적인 언론의 자율규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위축된 언론의 자율규제 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중재제도가 초창기부터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에 불균형적인 비중을 둠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된 인격권에 관한 연구에 비해 언론자유 연구는 빈곤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메타 분석 대상 논문 400편 중에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와 취재 관행의 문제점 등을 비판한 논문이 61편(15%)을 차지한 반면, '언론자유'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총 29편(7%)에 그쳤다. 세부 주제도 명예위법성조각과 상당성 개념, 알권리와 악세스권 등 언론법 이론과 법리에 관한 논문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언론분쟁 조정과정에서 언론의 존재 양식, 그리고 언론자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고 또는 위축되는지에 대한 언론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언론자유 연구 빈곤 문제는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데 법제와 법리적 연구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소모적인 논쟁에서 선행되었어야 할,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자유 보호 및 신장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 또는 반대로 언론자유 위축 효과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 또한 언론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제로 언론자유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 연구도 찾기 어렵다. 언론자유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셋째, 언론중재 연구 40년은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중재에 관여하게 된 사람들의 행위와 활동에 대한 탐구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언론중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신청인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 그리고 중재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이용 행위와 이해충돌, 전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언론중재인의 전문성과 공정성, 의사결정 과정 연구, 중재인의 자격과 자질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언론중재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 연구 40년을 탐색하는 첫 메타 분석 연구로 연구의 가치와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부록표 1〉 언론중재를 탐구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도	저자	논문명	대학	학과
1990	林炳國	韓國日刊新聞의 誤報와 그 救濟에 관한 연구 : 4大 日刊紙의 고침記事와 言論仲裁事例를 중심으로	경희대	정치학
1998	金炳國	반론권제도의 언론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
2007	김용주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시립대	법학
2010	김상우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한양대	신문방송학
2015	구본권	저널리즘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 묵은 기사의 인터넷 삭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신문방송학
2019	임승배	언론중재 기사의 문제점과 속성에 따른 심리 결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	동국대	신문방송학
2020	안유식	언론의 인격권침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법제도적 역할과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신문방송학

〈부록표 2〉 언론중재 관련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도	저자	논문명	대학	학과
1988	朴建昇	言論의 人權侵害에 대한 救濟制度考察: 論仲裁制度를 中心으로	경희대	신문방송
1988	李勝奎	言論媒體에 의한 人權侵害와 그 救濟制度에 관한 考察: 言論仲裁委員會의 仲裁制度를 中心으로	연세대	언론홍보학
1990	南星姬	言論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侵害에 관한 고찰 : 言論仲裁委員會의 仲裁事例를 중심으로	계명대	신문방송
1990	서원석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학
1992	尹承模	韓國言論仲裁制度의現況과改善方案연구: 1981년-1991년까지중재현황분석을중심으로	중앙대	신문학
1992	李庸俊	言論報道에 의한 프라이버시 侵害類型에 관한 연구 : 言論仲裁委員會의 事例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학 언론홍보전공
1993	이진숙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	언론홍보학
1993	채수일	방송시청자의권익침해에관한연구: 언론중재위원회의사례를중심으로	중앙대	방송전공

연도	저자	논문명	대학	학과
1994	宋義鎬	한국잡지의 명예훼손에 대한 一 考察 : 언론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언론 공보학
1995	權種華	언론보도에의한프라이버시침해연구: 최근6년(1988~1993)간의언론중재신청내용분석	한국 외대	신문 방송학
1996	任世薰	言論報道와 프라이버시權 侵害에 關한 硏究 : 6·29以後의 言論仲裁 事例를 中心으로	동국대	신문 방송학
1996	馬珍完	한국언론인의 전문직에 따른 직업윤리문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현황 사례 중심으로	서강대	언론학
1997	鄭種遠	言論仲裁制度의 問題點과 利用實態에 關한 硏究	중앙대	신문학
1997	여운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신청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신문 방송학
1998	趙南大	방송보도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 사례(1991-1996)를 중심으로	한양대	언론 정보
1998	鄭明慧	言論被害救濟와 言論仲裁制度의 運營에 關한 硏究	광주대	언론 홍보학
1998	宋永信	放送에 있어서 反論權에 관한 硏究 : 言論仲裁事例와 判例를 中心으로	한양대	법학
1999	김재병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 사례 및 법원판례 중심으로	전남대	정책학
1999	정우천	오보의 발생원인과 그 줄이기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 신청기사를 중심으로	광주대	언론 홍보학
1999	김소윤	보건의료관련 언론의 오보사례 분석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학
2000	윤성옥	방송에의한명예훼손에관한연구: 법원판례를중심으로	서강대	방송 전공
2000	주철수	반론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	법학
2000	김기열	반론보도청구권 법리 인식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신문 방송학
2000	조명식	반론보도중재결정이의신청및중재불성립결정사건의 권리구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반론보도청구소송과의비교를중심으로	연세대	방송 전공
2001	정영근	언론과 인격권 상충에 관한 언론법·윤리적 연구 : 언론중재사안 및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언론 매체학
2001	정동우	한국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	신문 방송학
2002	이미경	반론보도청구소송 추이에 관한 연구 :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1981-2000)	경희대	저널리즘학

연도	저자	논문명	대학	학과
2002	황천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의 특성 연구	목원대	언론학
2002	김윤정	언론중재신청을 통해서 본 지역주간신문의 실태분석	고려대	도시 및 지방 행정학
2003	이승형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취재보도활동 :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경북대	신문 방송학
2004	이성주	보건 의료 관련 기사의 언론중재 사례분석 : 해당 기자들의 인식 조사와 연계하여	연세대	보건 의료법 윤리학
2004	최원석	언론중재제도를통한정부의언론피해구제동향연구	연세대	저널리즘전공
2005	최승민	정부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연구	고려대	언론 정보학
2006	오광건	1996년 언론중재제도 개정 전·후의 언론중재신청 사건 양상 비교	경희대	저널리즘학
2006	김형석	참여정부의 언론피해구제신청 사례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동아대	신문 방송학
2007	황명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신청사례를 중심으로	경성대	언론 홍보학
2009	오은일	방송에서국민의알권리충족과개인의인격권보호의충돌에관한연구: 언론중재위원회의사례를중심으로	연세대	방송 영상
2009	정충신	국가기관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중재신청 청구와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 현직 언론인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언론 출판학 신문 전공
2009	김홍진	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	신문 잡지 출판 전공
2010	김은실	국민의알권리와인격권의갈등: 신언론중재법이언론사에미치는효과를중심으로	연세대	저널리즘전공
2011	김태운	오보유형과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 지역신문 기자들의 오보유형 설문사례 연구	광주대	언론학
2012	이상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일간지 심의사례 비교연구	서강대	신문 출판 전공

연도	저자	논문명	대학	학과
2014	진승현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 연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015	김두호	제도개선의 효과성 분석 : 언론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공기업정책학
2015	임승배	언론중재 심의 대상 기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2016	홍수용	정부의언론중재신청이기자의보도에미치는위축효과에관한연: 기획재정부출입기자를중심으로	건국대	저널리즘전공
2020	남승균	사자(死者)의인격권침해에대한연구: 전직대통령관련판례를중심으로	한양대	인터넷미디어전공

참 고 문 헌

관훈클럽 (2021). 특별좌담: 언론중재제도 40년. 〈관훈저널〉 63(2), 66-88.

김옥조 (2012). 〈미디어 법〉.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재협 (200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04호, 78-97.

김창숙 (2021). 언론중재위원회 40년 성과와 제언. 〈언론중재〉, 2021년 봄호. 32-45.

김해도 (1996). 핵심은 중재위에 직권중재 결정권 부여: 언론중재제도 강화의 배경과 전망. 〈신문과 방송〉 96-4. 104-107.

박용상 (1981),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통권 제1호, 19쪽

박용상 (1991),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 방안. 〈언론중재〉 11(3), 9-62.

서정우 (1981). 외국의 언론자율규제기구: 기능과 실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제1호.

손동권 (1992).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 12(1). 6-11.

심석태 (2014). 언론자유의 본질에 비춰본 한국 언론법제의 현실과 개선방향. 〈관훈저널〉 130-132

양경승 (2015).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언론중재〉, 136호, 40-65.

양삼승 (2004).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77호, 34-63.

양재규 (2006).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통권100호).

양재규 (2021). 언론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전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21년 봄호. 46-59.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언론중재위원회 (20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 및 해설. 〈언론중재〉, 137호, 68-97.

언론중재위원회 (2018). 〈연간보고서〉.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20).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21). 언론중재위원회 창립40주년 정책토론회 요약. 〈언론중재〉 2021 여름호. 46-48.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 URL : https://blog.naver.com/pac3083/222147736419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URL : https://www.pac.or.kr

염규호 (1996). 미국의 명예훼손법: 손해배상의 판례분석. 〈언론중재〉, 16권 3호, 44-60.

염규호 (2001). 방어 저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기사사전열람을 통한 미국 언론의 명예훼손소송 대책. 〈언론중재〉, 21권 4호, 56-69.

염규호 (2014).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제 1수정헌법의 국제적 인영향. 〈언론중재〉, 34권 1호, 56-69.

오이석 (2021).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 '피신청인'의 변. 〈언론중재〉, 2021년 봄호. 24-31.

유승삼 (1981). 언론단체 활동의 평가. 〈관훈저널〉 33. 82-104.

윤영철 (2015).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pp.3~32.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8권 3호, 109-138.

이동훈 (2002). 디지털 사회에서의 언론자유의 가치의 확립. 〈공법학연구〉, 3권 2호, 155-178.

이동훈 (201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 연구〉, 16권 3호, 93-114.

이수정 (1981), 언론기본법: 그 입법정신면에서의 소견. 〈언론중재〉 통권 제1호,

이승선 (2011).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 118호, 7-19.

이승선 (2018).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4(2). 87-133.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7(1). 1-65.

이재진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서울: 컬처룩.

이재진·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1(3). 213-260.

이재진·정영주 (2007). 명예훼손소송에 나타난 기업의 공익성 요건에 대한 탐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2), 141-77.

이효성 (2009). 포털 뉴스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 및 언론에 미치는 영향: 개정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13호, 105-13

임종훈 (2017). 제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 방안. 〈입법학연구〉, 14권 2호, 141-166.

장영수, "언론자유의 실현구조에 관한 서설", 〈언론중재. 1994년 여름호.

정애령 (2019).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 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5권 2호, 143-177.

정진석 (1994).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연구의 변천. 〈언론중재〉, 1994년 봄호.

정희성, 류석창, 김창숙, 김정민 (2012).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보고서〉.

조소영 (202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7(1). 1-65.

조소영 (202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와 내용상의 쟁점.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학술적, 법실무적 고찰〉 세미나 발제문. 2021년10월28일.

조준원·김진하 (2018).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 운용의 경제적 가치 평가. 〈언론중재〉, 147호, 76-89.

팽원순 (1986). 언론중재제의 성격과 문제. 〈언론학보〉, 7권, 17-4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한동원 (1996). 중재제도 운영 15년, 회고와 과제. 〈언론중재〉 1996봄호.

한병구 (1981).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언론중재〉 통권 제1호.

한상범 (1986). 언론보도와 공인. 〈언론중재〉 6(2). 16-22.

한위수 (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101호, 5-20

허만섭 (2010). 언론중재제도의 '국가기관 반론권' 과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 315-343.

Blei, David M., Ng, Andrew Y. and Jordan, Michael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ABSTRACT

40 Years of Researches in the Korean Press Arbitration System: A Meta-Analysis

Choi, Young Jae
Professor,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 meta-analysis of 400 papers on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nd 54 doctoral and master's degree thesis papers to explore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40 years of research on the Korean press arbitration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is a stable production of research related to "Press Arbitration" and "Media and Human Rights"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re are 7 doctorates and 47 master's degree holders who gradu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major in 1988, and prominent and prolific researchers group was formed during the 40 years of the press arbitration research.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topics have been changed over the five periods while reflecting changes in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related laws,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conflicts between political power and the news media. In particular, research on press arbitration has been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able TVs' emergence in the 1990s,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media since the 2000s, and recent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such as social medi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rones. Third, there are shadow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research, including the relative contraction of media self-regulation research, poverty of press freedom research in contrast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damage relief and personal rights research, and gaps between law and institutional research and human beings' behavioral research. This study is the first meta-analysis to explore 40 years of press arbitration research, with both values and limitations.

Keywords: press arbitration research, personal rights, damage relief, freedom of the press, self regulation

[논문투고일 2021. 11. 15. 논문수정일 2021. 12. 8. 게재확정일 2021. 12. 12.]